

「K-섬유패션스트림 협력강화 및 수출지원」 의류제조 수혜기업 모집공고(추가)

국내 섬유패션 의류 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목표로 “K-섬유패션스트림 협력강화 및 수출지원”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 관련하여 의류제조 수혜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9월 27일
한국패션산업협회장

□ 지원개요

- (목적) 국내 패션 의류제조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의류 수출 활성화 지원
- (지원대상) 디자인 샘플 제작 및 패턴을 개발 하는 의류 제조 기업
 - *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의류제조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완료 업체
- (지원규모) 30개사 내외, 기업별 최대 1천만원 이내
 - * 추천 브랜드 수출 실적 및 샘플·패턴 개발 현황에 따라 상이
 - * 본 사업은 국내 패션 브랜드가 추천한 샘플·패턴을 개발하는 의류 제조 봉제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임
 - * 지원금 한도 내 공급가액의 90%, vat제외 (자기부담금 : 공급가액의 10%+지원금 초과분+vat)
- (지원내용) 해외 시장에 수출되는 K-패션 브랜드의 시제품 제작비(24년 5~10월, 해당기간)
 - (시제품개발지원) K-디자인, K-소재, K-생산 등 All in Korea 제품*에 해당되는 패션의류 샘플 개발 및 패턴 개발 등 시제품 개발비
 - * All in Korea 제품 : 한국 패션 브랜드가 디자인 기획하여 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의류 제품임
 - (지속가능패션지원) 친환경 등 ESG 관련 국내외 인증 소요비용 지원

□ 신청개요

- (신청방법) 이메일 신청 ledome@koreafashion.org
- (신청기간) 2024.9.27(금)~10.11(금)
- (선정방법)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서류심사 평가

평가기준	세부내용	배점
시장 경쟁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의류 제조 매출 실적, 고용 창출 등 산업 활성화 기여도 ○ 협업 패션 브랜드의 수출 경쟁력 (브랜드 수출실적) ○ 기계, 장비 등 제조 시설 보유 현황 	60
기업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업계 이해도 및 전문 인력 운영 현황 ○ 의류 제조 기술력 및 동업종경력 	40
	○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적합 여부 판단	적합여부

* 상기 내용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○ (제출서류) 접수 시 아래 첨부서류 일괄 제출

구분	제출서류	비고
신청기업 (의류제조기업)	- 신청서 및 패션 브랜드 협력 확인서	지정양식
	- 기업 증빙자료 1) 사업자등록증 2) 통장사본 3) 국세 납세증명서 4) 지방세 납세증명서	스캔본 제출
	- 최근 3개년 매출실적 1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('21년~'23년) * 21년 이후 창업자는 해당 기간 자료만 제출 * 신청서 기재 금액과 증빙 자료 금액 동일해야 함 (자료 외 실적 불인정)	스캔본 제출
	- 기계, 장비 등 시설 보유 현황표	기업 자유양식
추천기업 (패션 브랜드)	- 추천기업(패션 브랜드)과의 거래실적(추천기업 협조 必) * 작업지시서, 거래증명서, 세계산서 등	'24.5월~10월까지의 실 거래 실적에 대한
	- 수출실적증명서 ('22년~'24년 현재) *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	'22년~'24년 현재 수출 실적

○ 유의사항

지원 제외 대상

- ◆ 휴·폐업 기업
- ◆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◆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 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가능
- ◆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(또는 기업)
 - .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 - . 징역, 금고의 형 등 형사처분 이력이 있는 자
 - . 산업재해·공정거래·임금체불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 자
 - . 기업 및 대표자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- ◆ 기타 사회적 물의 유발 등으로 정부 지원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

공통

- ◆ 정부 지원금 중복 수혜 불가
 - . 동 사업에서 신청한 동일한 의류 제조 시제품 제작 관련으로 타 정부 지원금에서 중복 수혜 할 수 없음.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 환수
- ◆ 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참가를 포기할 경우, 차 순위 업체 지원함
- ◆ 사업 기획·결과에 수반하는 정보(매출 현황, 수상 이력 등)를 협회와 공유하여 효과적 사업 운영 및 후속 지원을 위해 적극 협조 요망
- ◆ 동 사업 참여를 통한 결과는 보고자료 및 홍보물로 이용될 수 있음

☎ 문의처 : 한국패션산업협회 사업1부 (이메일) ledome@koreafashion.org (전화) 02-528-0109 / 0108